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98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손명수 · 이성윤 · 이해민
복기왕 · 이정현 · 문진석
김영배 · 문정복 · 임호선
백선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내용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